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문제 1】 'A피자'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甲은 직영점인 X지점의 점포와 관련하여, 乙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 1년 간 본부 甲이 해당 점포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에서 비용, 로열티 명목 등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乙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본 계약의 체결 후 2년 차에는 해당 점포를 가맹점으로 하여 乙이 운영하기로 한다. 단, 甲과 乙의 협의 하에 해당 점포에 대한 甲의 직영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아래 물음 1), 물음 2)는 별개의 독립된 문제임

물음 1) 甲은 乙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甲과 乙이 체결한 계약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乙이 지급한 1억원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甲은 乙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예상손익계산서에 월매출액 약 3천만원, 영업이익 약 5백만원이 예상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매장의 평소 월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저조하였고 향후 매출액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가맹희망자인지 여부에 근거하여 해당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 'M제과점'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甲은 乙과 2015년 12월 7일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M제과점의 이미지 동일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자, 甲은 2017년 6월 26일 乙에게 2017년 7월 10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게 시정을 위한 기한의 연장과 그 동안에 식재료나 부자재 등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甲은 乙의 시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별도의 조치 없이 2017년 7월 11일부터 식재료나 부자재 등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고, 2017년 8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甲의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고 가맹사업자에게 제공된 경우, 해당 내용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별도 합의 없이도 가맹계약의 내용에 편입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